

● 제290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제1차 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검 토 보 고 서

2019. 11. 1.

운 영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】

I. 결의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김호평 의원 외 25명 공동발의
- 나. 제안일 : 2019. 10. 16.
- 다. 회부일 : 2019. 10. 22.
- 라. 의안번호 : 1085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은 정부와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 정책에도 불구하고, 심각한 수준의 청년 실업률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일자리, 복지, 주거, 교육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.
- 이에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청년정책을 위한 「청년정책기본법」 등이 여전히 미비된 실정이며,
- 특히, 서울시는 청년 일자리, 청년 창업, 청년 복지, 청년 주거, 청년 일반 정책 등의 업무가 각 실·국으로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청년정책 방안 모색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.

- 이에 서울시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청년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서울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의 청년정책을 견인하는 등 국가경쟁력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음.
- 따라서, 서울시의회는 청년문제에 대한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청년관련 조례 제·개정 및 청년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함.

3. 참고사항

- 관련 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,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37조
-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선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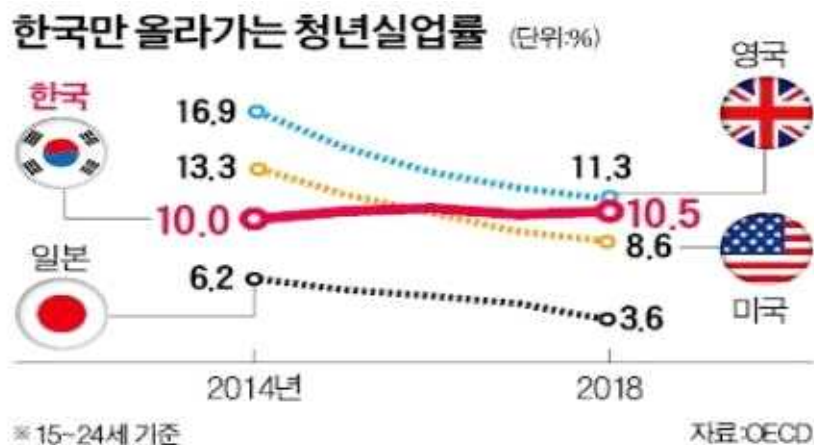
1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취지

- 이번 「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」¹⁾은 일자리, 복지,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심각한 청년문제가 지속되고 있어, 의회 차원에서 청년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실질적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제안되었음.

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

- OECD(경제협력개발기구)²⁾에 따르면,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2014년 10% 진입 후 최근까지 10%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OECD 주요국의 청년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흐름임.

<그림-1> OECD 주요국 청년실업률(2014년~2018년)

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,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87조에 근거하여 구성됨.

2) OECD 주요국가 청년실업률, OECD 통계.

- OECD 회원국의 평균 청년실업률을 살펴보면, 2014년 15.1%에서 2018년에는 11.0%로 낮아졌으며, 같은 기간 미국(13.3%→8.6%)과 일본(6.2%→3.6%), 영국(16.9%→11.3%)의 실업률은 감소한데 반해,
 -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2018년 기준 10.5%로, 2014년(10.0%) 대비 0.5%포인트 상승하는 등, 주요국의 청년실업률과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.
- 통계청의 국내 연령별 실업률 추이('13~'19.7.)에서도 청년 실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, '19년 7월 기준 주된 구직 연령인 15~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(4.1%)의 2배가 넘는 9.8%에 달하며, 30~34세 실업률 역시 전체 실업률을 상회하는 4.6% 수준으로 나타남.³⁾

<표-1> 연령별 실업률 추이

(단위: %)

연령별		2013	2014	2015	2016	2017	2018	2019.7
전체	15~64세	3.2	3.6	3.7	3.8	3.8	3.9	4.1
	15~29세	8.0	9.0	9.1	9.8	9.8	9.5	9.8
청년	30~34세	3.7	3.5	3.3	3.8	4.1	4.4	4.6

자료: 통계청 국가통계포털

- 청년 체감실업률도 통계 작성('15년) 이후 20%대를 지속 상회하는 등 국가재난 수준의 청년고용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며, 특히 지난해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2.8%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음.⁴⁾
- 청년층은 계층적으로 사회에 최초로 진입하는 이행기로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공적 지원대상이며,

3)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4) 청년 체감실업률은 2015년 21.9%, 2016년 22.1%, 2017년 22.7%, 2018년 22.8% 임. 통계청, 2018년 「청년체감실업률」.

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갈 예비 주역으로서 앞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보장할 인적 자원이라고 할 것임.

-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과 주거 불안, 신용 악화 등 총체적인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, 국가 재난수준의 청년고용 문제는 청년 주거 빈곤, 부채, 결혼기피 등의 문제로 확대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.
- 이에 서울수도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⁵⁾, 주거 빈곤⁶⁾ 등 악순환의 시스템에 놓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, 서울시 청년의 특성 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음.
- 최근 서울시는 조직 확대·개편을 통해 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하고, 청년이 현실과 미래의제를 해결할 역량과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경험하고 축적하는 청년자치기반 조성을 위해 시장직속 기구로 청년청을 신설(2019.1.1.)한 바 있음.
- 하지만 여전히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주요부서가 서울시 각 실국(청년청, 경제정책실, 복지정책실, 주택건축본부, 노동민생정책관 등)에 분산되어 있어, 특별위원회의 제안이유와 같이 체계적인 청년정책 방안 모색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조직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.
- 참고로 서울시의회는 청년문제의 시급성과 통합적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공감해 제8대~제9대에는 청년발전특별위원회, 제10대에는 청년특별위원회('18.9.14~ '19.9.13.)를 구성해 활동한 바 있음.

5) 2018년 기준 서울시 전체 실업률 4.8%, 서울시 청년실업률은 10.1%, '2019년 서울시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', 청년청.

6) 34세 이하 1인 청년가구의 단독, 다가구 및 고시원 등의 주거비율은 67.1%, 위의 자료.

- 이상을 종합하면, 청년문제가 사회 구조적 문제점과 연관되고 청년 정책이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서울시의회 차원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대안 발굴 필요성이 있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회 결과

- 동 안건과 관련하여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37조제2항7)에 따른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결과, 관련 상임위원회(행정자치위원회, 기획경제위원회, 도시계획관리위원회)는 별도 의견이 없음.

7) 제3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참고표 1 2019년 서울시 청년 정책 주요사업

구분	주요 세부실행계획	소관부서
4개 분야 25개 사업		
1	설 자리(청년의 사회참여 역량강화 및 안정적 생활지원)	
7개 사업	1-1. 청년활동지원사업 확대 추진	청년청
	1-2. 희망두배 청년통장 운영	지역돌봄복지과
	1-3. 서울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범위 확대	청년청
	1-4.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사업	청년청
	1-5. 청년인생설계학교	청년청
	1-6. 청년예술지원사업 운영	서울문화재단
	1-7. (신규)청년 미래투자기금 지원	청년청
2	일 자리(일자리 진입지원 및 안정망 구축)	
6개 사업	2-1.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	청년청
	2-2.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	일자리정책과
	2-3. 기술교육원 청년대상 직업훈련기회 확대	일자리정책과
	2-4. 서울일자리센터 통합지원서비스 강화	일자리정책과
	2-5.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	노동정책담당관
	2-6. 취업날개(면접정장무료대여)서비스 운영	일자리정책과
3	살 자리(청년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)	
6개 사업	3-1.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	주택공급과
	3-2. 사회주택 공급	주택공급과
	3-3. 청년 매입임대 주택 공급	주택정책과
	3-4.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	주택정책과
	3-5.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	주택정책과
	3-6. (신규)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	주택정책과
4	놀 자리(청년활동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확대)	
6개 사업	4-1. 청년활력공간 조성 및 지원 확대	청년청
	4-2. 청년허브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실행기반 강화	청년청
	4-3. 청년기업 공공시장 진입장벽 해소 및 참여기반 마련	청년청
	4-4. (신규)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지원	청년청
	4-5. (신규)서울시 청년포털 구축 및 운영	청년청
	4-6. (신규)서울미래인재 양성 및 인재풀 구축	청년청

참고자료2 4대분야 중점 추진과제(청년 일자리 대책(18.3), 관계부처합동)

1. 취업 청년 소득·주거·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

- ▶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청년지원을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
 - * ('18년) 30만원, 3개월 → ('19년) 50만원, 6개월(졸업·중퇴후 2년 이내 청년 대상)
- ▶ 기존산단 리모델링*, 신규산단 모범사례 조성**을 통해 주거·복지·문화·교통여건 등 개선으로 청년이 가고 싶은 산단을 조성
 - * '18년 시범산단 6개소 선정 → '22년까지 25개로 확대
 - ** 신규 국가산단 및 도점산단 대상 '19.上 3개소 이상 착공('21.上 준공)
- ▶ 지역특구 세제지원시 청년 고용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
 - 고용 1인당 감면한도 적용시 청년 근로자 고용에 대한 감면한도 상향
 - * (現) 상시근로자 1,000만원 → (改) 청년 상시근로자 2,000만원
- ▶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자금 개편*
 - * ① 청년일자리창출 기업을 우대하는 전용자금 신설(3천억원),
 - ②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이자환급제도 확대(1명 고용시 0.1 → 0.2%p ↓)
 - ③ 청년고용특별자금 2배 확대(年2천억→4천억원) 및 대출한도·금리우대
<(現) 2.74%(1억원 한도) → (改) 1명 고용 : 2.54% / 2명 이상고용 : 2.34% (각 2억원 한도)>
- ▶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 중심 R&D 지원체계 개편
 - * R&D지원금 4~5억원당 청년 1명 채용의무화(과기부 등 11개 부처, 1.2조 → 2,600명)
- ▶ 건축물 화재안전 조사 및 DB 구축 사업시 청년 중심 고용
 - 전국 215개 소방서별 합동점검단 편성·운영, 1개반 점검인력 3~7명
- ▶ 국유재산 총조사시 조사인력 50% 이상 청년 중심 채용('18년, 약 1,000명)
- ▶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(고용부, '18년 1,114억원)을 활용하여 고용 위기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사전컨설팅 등 지원
- ▶ 대기업이 협력사 일자리 창출 지원시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부여
- ▶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제외기업 우선 선정
- ▶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 확대로 연결되도록 신규채용·임금보전* 등 지원 강화,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 등 생산성 제고 지원
 - * 現 신규채용 인건비(1인당 月40~80만원) 및 임금보전(1인당 月최대 40만원) 지원

2. 창업 활성화

- ▶ 청년 고용 우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'일자리 매칭펀드(1천억원)*', '청년일자리 지원펀드(1천억원)' 등 신규 벤처투자 펀드 조성
 - * 민간 벤처캐피털이 고용창출 우수기업 후속투자시 정부가 1:1 매칭투자하는 펀드
- ▶ 도시재생 지역내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해 청년 창업(집수리·마을카페 등) 활성화 및 업사이클 분야* 청년 창업 촉진
 - * 재활용품 공유·거래가 가능한 '소재뱅크' 구축, 온라인 판매처 구축, 지재권 출원 등 패키지 지원 → '22년까지 450개 업사이클 기업 육성 (1,710명 고용창출)
- ▶ 청년창업농·어 사업을 확대하고, '복합형 청년몰'을 조성하여 청년상인 육성 ('18년, 400명+α 신규)
- ▶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의 유휴공간(국유재산·주민센터 등)을 조사하여 특성별 창업공간으로 조성하고, 청년창업자에게 저가 공급
- ▶ 글로벌 창업특화 BI 운영(베트남 등 아세안), 주요국 엑셀러레이터 DB 구축(→ 매칭), TIPS·창업선도국 창업플랫폼(英 Enterprise-Hub 등) 연계

3.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

- ▶ 일본·아세안 정책지원 집중(~'22년, 1.8만명)
 - (일본) K-Move스쿨 인원을 일본에 집중 배정(3,200명중 40% 이상)하고, 한일 대학간 3+1(韓 3년 + 日 1년→ 日 취업) 프로그램 활성화
 - (아세안) 청해진 대학* 지정 및 韓 진출기업 중간관리자 연수과정을 확대 (K-Move스쿨 20% 이상)하고, 청년·진출기업간 연결 활성화**
 - * 대학의 해외취업 준비과정 운영지원 프로그램(아세안: '17년 1개)
 - ** 이음프로젝트 : 진출기업 소개, 취업알선 등 실전 기회 제공 → 채용 연결 지원
- ▶ 세제, 입지 등 유턴기업 인센티브를 외투기업 수준으로 확대
 - * ①(세제) 대기업 부분복귀시 조세감면 신설(법인·소득세 3년간 100% + 2년간 50%)
 - ②(입지) 국유재산 수익계약 허용, 장기임대(50년), 임대료 특례(1%) 및 최대 100% 감면
 - ③(제도) 유턴기업 선정, 각종 서비스를 일괄 처리하는 One-stop 시스템 구축
 - ④(기타)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턴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 R&D사업 등 지원 우대

4. 즉시 취·창업할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

▶ **희망사다리 장학금 제도 개선**

- 동일기업 근속시 中企 의무종사기간 단축(2→1.5년),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허용

▶ **일반계고 비진학자 사전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(고용센터-교육청 MOU, '18.7~),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확대('18.下, 2→3천명) 등 취업지원 강화**

▶ **병 봉급인상과 연계하여 목돈마련저축제도(희망적금) 확대**

* 적립금 상향, 추가금리 및 비과세혜택 부여

▶ **유급지원병 보수 일반하사 수준 인상, 장기복무 선택 허용 등으로 유급지원병 기회 확대('17년 4,000명→'18년 이후 年 8,500명)**

▶ **기업 채용 공고시 서류전형 평가기준 공개 유도 및 워크넷에 AI 매칭 도입**

▶ **사내대학 및 계약학과 확충 : 운영비 등 재정지원 강화**

- (사내대학) 설립·운영 요건 완화*, 시설장비비 등 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용 지원

* 대학 위탁 및 중소기업 공동설립 허용, 입학 자격 확대

(<現> 해당 기업 및 협력업체 직원에 한정 → <改> 타기업 동종 업계 종사자도 허용)

- (계약학과) 입학 1년 만에 취업 후 학업을 병행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신설하고, 운영대학에 재정지원(10개교, 교당 20억원)